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박성연 의원 외 24명

나. 의안번호 : 제 455 호

다. 발의일자 : 2023. 2. 2.

라. 회부일자 : 2023. 2. 9.

2. 제안이유

- 보도공사 시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보도의 공사를 완료한 때는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신설함.(안 제11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보도공사 시 공사 참여 업체 및 기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① <u>관리자는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보도포장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2012년 2월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¹⁾하고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 이는 보도포장 공사 구간 시·종점에 공사명·공사구간과 기간·시공사·감독자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담당자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

1) “보도(歩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상 방침 제134호 (2012.5.4.)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 서울특별시상 방침 제134호(2012.5.4.)

1.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으로 공사관계자의 책임감 고취 및 금지 부여
2.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실공사시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3. 공사현장에 '임시 보행로' 설치 철저 및 '보행 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4.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 동절기 보도공사 관행 없애고 부실시공 방지
5. 보도블록 파손시 시민혈세 낭비 없도록 파손자가 보수비용 부담
6.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이 제보하고 살피는 654명 규모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7. 파손, 침하된 보도블록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바로 개선
8.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오토바이 주행 철저히 단속해 시민 보행권 보장
9. 납품물량 3% 남겨두는 <보도블록 은행> 운영으로 파손 블록 신속 교체
10.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해 체계적인 보도관리

-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발간하여 보도 신설 및 노후 보도 정비 그리고, 굴착 후 복구 등 보도포장과 관련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대상공사 및 규모, 설치방법, 표지내용 등 세부사항을 매뉴얼에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도공사 실명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보도공사 참여자의 책임시공 의지를 보다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사료됨.

3.6.4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연장 100m이상 모든 (전폭)보도포장공사는 보도 공사참여자의 책임사공 의지 강화를 위하여 실명제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설명】

보도공사의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보도관련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실명제 표지판 설치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시장방침 제134호, 2012. 5. 4), 「보도공사 실명제」시행계획(도로관리과-8452호, 2012. 5. 11), 「보도공사 실명제」확대시행 및 디자인 개선(보도환경개선과-1634호, 2013. 2. 3)

가. 대상공사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폭)보도포장공사

- 1) 거리환경 개선사업(보도포장 공사가 주 공종인 사업)
- 2) 민영사업(대형 건축물 주변 도로정비 공사 등)
- 3) 전폭 굴착복구 공사
- 4) 그 밖의 사업 중 보도 전폭을 정비하는 사업

나. 대상규모


- 1) 연장 100m 이상인 모든 보도포장공사(보도 폭 무관)

다. 설치방법

- 1) 공사구간의 시·종점 기준 10m 이내 보차도경계석 측에 접하게 설치
- 2) 보행공간 및 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로수분 사이
- 3) 장애인 점자블록 등 주요시설물과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
- 4) 단, 공사관계자 협의 후 시야가 확보된 녹지 또는 여유지에 설치가능

라. 표시내용 :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리사·감독자 정보(기관명, 성명, 전화번호)

마. 표지판 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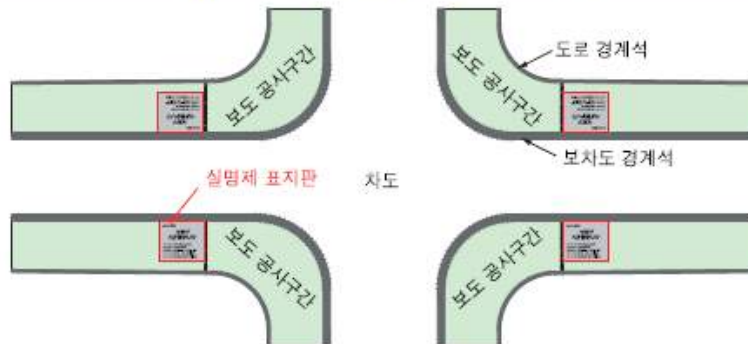
실명제판 규격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 질 : 파손, 마모, 오염, 미끄럼 등이 적은 재료 (예 : 회색계열의 화강석) ○ 글 자 : 음각 처리하여 마모 최소화, 눈에 잘 띄는 색상 선정 ○ 글자체 : 서울남산체EB(음각, 유성페인트) ○ 로 고 : ○○구 ○ 저희가 시공했습니다 : 남산체에 기울기적용 ○ 마감면 : 잔다듬 등(미끄럼저항 40BPN 이상) ○ 사이즈 : 가로 × 세로 × 두께 (30cm × 30cm × 5cm) <p>※ 글씨크기는 표지판 비율에 맞게 설정</p>

〈그림 3.6.6〉 실명제 표지판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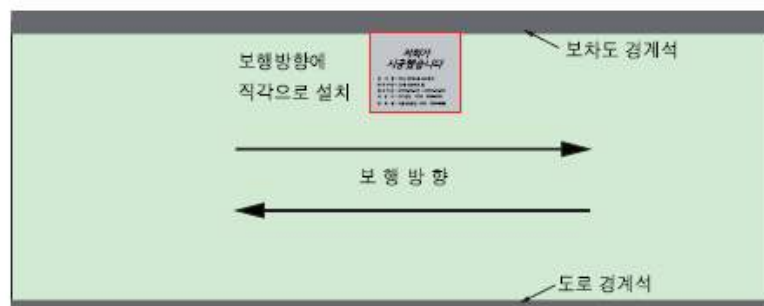
일반적인 경우



대규모사업 등으로 여러 구간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



<그림 3.6.7> 보도 형태별 실명제 표지판 설치 상세도